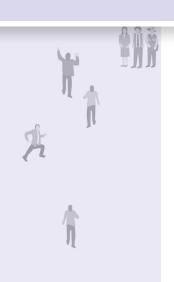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		-321
산업통상자원	원부	- 334
특허청		-337
관세청		-337
환경부		-337
국토교통부		- 345
기상청		-357
보건복지부		- 359
여성가 족 부		- 367
법무부		-371
교육부		- 373
고용노동부		- 374
인사혁신처		- 378
행정자치부		. 379

경찰청380
국가보훈처381
국방부382
방위사업청386
병무청387
문화·체육관광부389
문화재청391
방송통신위원회392
미래창조과학부393
농림축산식품부 ·····397
식품의약품안전처405
산림청406
해양수산부41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획	재정부	
1.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제외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작 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	소득세법 ('15.1.1)
		배업 제외) 소득세 과세 □ (참고)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 회 의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1)
2.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 과 합산하여 과세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규 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14.1.1)
		'14~'16년 소득분 비과세'17년 이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 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 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서만 공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 회 의결	
3.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 서 발급 및 전송이 가능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및 전자	소득세법 ('15.1.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자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진발급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1)
4.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 신 설 〉	2014년 세법개정안 □ 다음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소득세법 시행령 (2015.5.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비 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적용기한: '14.12.31. 	 ○ (좌 동) ○ 적용기한: '16.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관계 부서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차입금요건 공제한도 만기 15년 이상 〈 신 설 〉 고정금리 or 비 거치식 분할상환 기 타 500만원 〈 신 설 〉	차입금요건 공제한도	소득세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2)
8.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방식)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한도 미적용) 본인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추 가〉 ○ (700만원 한도 적용)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소득세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 자 의료비	☞(참고)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9.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특례내용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 단일세율 적용 ○ 적용기한	 (좌 동)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헤드쿼터 인증기업 : 적용기한 	소득세법 ('15.1.1)
	- 2014년 12월 31일	폐지 - 그 외 기업: 2016년 12월 31일 (2년 연장)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2)
10.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기간 연장	소득세법 ('15.1.1)
	 적용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6 0세 이상) 및 장애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2)
	지원내용: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o (좌 동)	
	〈신 설〉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 면기간을 2년 추가(3년→5년)	
	o 업종: 농업, 임업, 제조 업 등 - 주점 및 비알콜 음료	(좌 동)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점업, 금융보험업 등 제외	☞(참고)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적용기한: '15.12.31		
11.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 대상 확대	소득세법 ('15.1.1)
	직전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	속하는 반기 의 상시고용인원	
	o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 을 받	20명 이하 ㅇ(좌 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2)
	은 자 o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 지 않을 것	ㅇ(좌 동)	
	o 원천징수세액 신고·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12.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납입금액 기준으로 400 만원까지 12% 세액공제	4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하 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소득세법 ('15.1.1)
		경우에는 납입 금액 기준으로 300 만원까지 12% 세액공제 (참고)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3)
13. 자녀장려세제 도입	〈신 설〉	□총소득기준 4,000만원 이하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조세특례 제한법 ('15.1.1)
		*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 로장려금과 동일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기초생활수급자 [*] 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 * 생계급여에 한함 □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 세액공 제 중복적용 배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법개정안	소득세제과 (044-215- 4154)
1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o 근로소득자 ※ 자영업자 확대적용 시기는 당초 계획상 '14년 소득분부터 적용		조세특레제한법 ('15.1.1)
	□ 근로장려금의 수급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주거 ·생계급여를 받은 자 ○ 외국인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 수급 제외자 축소 〈삭 제〉 ○ (좌 동)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4)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원칙) 종합소득과세표 준 확정신고기간에 종 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종소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 ○ (예외) 종소신고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5.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 신청한 경우 종 소신고한 것으로 간주 - 확정신고의무 없는 자, 퇴직소득 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 만 있는 자 등 - 일용근로자 〈추 가〉 □ 근로장려금의 수급 재산 기준 ○ 1세대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주택가격 6천 만원 이하) ○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토지ㆍ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예ㆍ적금 등, 골프장 회원권 등	주택 가격기준 삭제자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	조세특례 제한법 ('15.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154)
	^{석급 등,} 출포상 외천권 등 〈신 설〉	□ 재산기준 1억원~1억4천만원까지는 근로·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세법개정안	
16.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 기한후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종료일의 다음날로부	□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 3개월 → 6개월	조세특례 제한법 ('15.1.1)
	중요일의 나름일도구 터 3개월 이내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④ 국제 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	□ 가산세율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20% - 부정행위: 40% 〈신 설〉 ○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10% - 부정행위: 40% 〈신 설〉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60%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6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국세기본법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 4331)
5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벌금 인상	□ 미신고 과태료 :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 □ 미소명 과태료 : 미소명 금액의 10% □ 형사처벌(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 : 미신고금액 10% 이 하 벌금 또는 2년 이 하 징역	□ 미신고 과태료 인상 :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 미소명 과태료 인상 : 미소명 금액의 20% □ 형사처벌 강화 : 미신고금액 2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국제조세조정에관 한법률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 4331)
6 해외 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확대	□탈세 등 신고시 포상금 지급 ○ 지급 대상 및 포상금 ① 조세탈루, 부당환급 등 신고: 탈루세액 × 5~15% ②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 고: 징수금액 × 5~15% ③ 신용카드・현금영수 증 등 결제거부, 허	(좌동) (좌동) (좌동)	국세기본법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 43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위발급 신고: 거부금액 × 20%(50 만원 한도) ④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건당 100만원 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무 위반 신고(다만, ①,②에 따라 포상금 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 과태료・벌금 × 5~15% ○ 포상금 지급 한도: 20억원	⑤ ①,②에 따른 포상금과 별도로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행 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기국제 거래명세 서 신고 기한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료 부과 제출의무 대상 자료 및 기한 국제거래명세서(과세 표준 신고시) 계약서, 가격표, 명세표 등(과세당국 요구 시) 과태료 부과 〈신 설〉	 ○ (좌동) 국제거래명세서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좌 동) [조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국제조세조정에관 한법률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 4335)
8 해외 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직접투자시 자료 제출 의무 ○ 제출자료	□ 제출자료 확대	소득세법, 법인세법 ('15.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확대 및 과태료 인상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천만원 한도) ☞(참고)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 4332)
⑨ 과소자본세제적용기준 강화	□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국외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포함 - (좌 동) 일반 업종: 2배 - (좌동) 	국제조세조정에관 한법률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 4335)
의 특정외국법인(CFC)유보소득합산과세제도 개선	판정 o 내국인과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을 것	(좌동)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 거주자'가 소유한 외국법인주식	국제조세조정에관 한법률 ('15.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 433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국세와 관세의과세가격간 사전조정제도도입	와 관세의 과세가격○ 신청시기: 내국세의 정상7 방적 사전승인(APA) 신청 는 관세의 과세가격 사 (ACVA) 신청시 동시 신청도입○ 신청대상: 국세와 관세의 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2	□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 ○ 신청시기: 내국세의 정상가격 일 방적 사전승인(APA) 신청시 또 는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ACVA) 신청시 동시 신청 가능 ○ 신청대상: 국세와 관세의 과세 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 ○ 조정방법: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은 과세가격의 평가방법 및 적정	
		는 과제가격의 평가정합 및 작정 범위를 협의 하여 결정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 4334)
II 내국 법인의 국외자회 사 배당 소득에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o 내국법인(모회사)이 국 외자회사로부터 배당 을 받은 경우 - 국외자회사의 외국법	□ 지분율 요건 강화	법인세법 ('15.1.1)
대한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여적용대상 국외자회사: 모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 보유	o 적용대상 - 국외자회사: 모회사가 25% 이상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 4332)
18.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신설〉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서면 자진 신고자 • 산출세액의 30% 경감(15만원 한도)	관세법 ('15.1월)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자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자진신고 불 이행자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o 납부세액에 30%의 가 산세 추가	ㅇ 가산세율을 40%로 상향조정	(044-215-4412)
	〈 신 설 〉	□ 반복적인 자진신고 불이행자 ○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자진신고 불이행 ○ 60% 가산세율을 적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19.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	□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 보금 ○ 물품과세가격의 60%	□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 ㅇ 물품과세가격의 40%	관세법 ('15.1.1)
0.60-0.00	된 마시 마시 마시 0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 4413)
20.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 5년 단일	□ 관세채권 규모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을 차등화	관세법 ('15.1월)
		○ 5억원 이상 : 10년 ○ 5억원 미만 : 5년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참고)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1.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관세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 경정청구기간 확대	관세법 ('15.1월)
	ㅇ 3년	ㅇ 5년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참고)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필요적 출자비율			
	② 경제 자유구역	o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경제자유구역	o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법 ('15. 1월)
	내 항만 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 변경	개발계획 변경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알림 · 뉴스〉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포	산업통상 자원부 정책기획팀 (044-203- 4613)
2. 취약계층 에너지바우		ㅇ 산규	○ 중위소등 40% 이하 취약계층(노 인·아동·장애, 98만 가구)을 대상으로 동절기('15.12~'16.2)	에너지법 ('15. 12월)
			에 총 10만원 내외의 에너지바 우처 지급('15.12)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너 지법 및 에너지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4)
3. 산업단지 산업시설구 입주가능 확대	·역 내	산단 산업시설구역에는 13종의 지식산업만입주 허용	 지식산업 7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 총 20종의 지식산업이 산 단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 도록 함 	및 공장설립에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 4431)
질서를 수거	1 계량기수거	신설	o 계량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 우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자발적	계량에 관한 법률 ('15.1월)
바로잡아 국민 생활 보호			으로 수거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 는 경우 정부가 수거명령토록 함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6)
الماد	[2] 과징금· 공표	신설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2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가능토록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특	허청	
1. 특허청고시 사용명칭으로 출원한 경우 할인	ㅇ 62천원	o 56천원으로 인하(특허청고시 상 품명칭으로 전자출원한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15. 1월)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 481-5267)
	관	세청	
1.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ㅇ 납부할 세액의 30%	ㅇ 납부할 세액의 40%	관세법 제241조 ('15. 1. 1)
가산세율 인상			관세청 특수통관 과 (042-481-7834)
	o 신 설	o 반복적인 신고 불이행자(2년내 2회이상): 납부할 세액의 60%	관세법 시행령 ('15.1월중 개정예정)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4)
	횓	·경부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 스 배출을 직접규제 제도 대상(관리업체), 목표를 매년 결정 사업자 또는 업체 단위로 관리업체 지정 	 기업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배출권을 거래 제도 대상(할당대상업체), 목표를 계획기간 단위*로 지정 * * 1차 계획기간은 3년으로 설정 ('15~'18)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15.1.1.)
	 온실가스 감축으로 목표 달성 목표량 보다 초과로 	○ 업체 단위 로 할당대상업체 지정	환경부 배출건거래제 추진기획단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위반시 제조·수입 불가되며, 판 매중지 가능, 5년 이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 벌금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3년마 다 고시('15년 상반기중 최초 고 시 예정)되며, 3년간 등록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는 유예기간 이 부여됨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 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	환경부
[3] 화학물질 안전정보 의 제공		○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 한 혼합물의 양도자는 양수자에 게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 여야 함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 (참고)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 해명〉 화평법 · 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④ 유해화학 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신설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함유된 화학물질별로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 전(총량 연간 1톤 초과 확인시) 또는 다음해 4월30일(총량확인 곤란시)까지 신고하여야함 이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화평법·화관법하위법령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시행(12월중예정)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5 위해우려 제품 안전관리 제도 신설	ㅇ 신규	○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되는 위해우려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하려면 그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함 이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3. 화학물질 의 안전한 유통·관 리를 위한 개정화학 물질 관리법	화학물질 관리주체	유독물은 지자체, 취급 제한물질 및 수입화학 물질은 지방환경관서 에서 관리	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 o 유해화학물질(유독물, 취급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영업자 관리를 지방환경관서로 일원화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	
시행	② 취급시설 설치 시 장외영향 평가서 제출	o 사전 검토 없이 취급 시설을 설치	 아 사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 제출 · 검토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강화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 해명〉 화평법 · 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 	화학물질관리법시 행령 ('15.1.1)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4)
	③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주체의 변경	o 주로 공무원의 육안검 사에 의존	o 전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후 검사결과를 환경청에 제출 「참고」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	
	4 사고대비	• 기존 자체방제계획은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시 행령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를 위한	지역사회 고지에	위해관리계획을 수립 후 지역	('15.1.1)
	위해관리 계획 제도 시행	관한 면제 규정이 많아 실효성 부족	사회에 의무적으로 고지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4)
3. 하이브리 구매보조금	드자동차 구 지원사업	-	 CO₂ 배출량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한구매자에게 보조금 100만원 지급('15.1.1일 출고분부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알림/홍보 〉 보도·해명〉환경부,'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제도 시행'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 -6927)
4. 특정수질 검출 및 약	— —	○ 검출한계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먹는물 수준)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기준을 먹는물 수준으로 합리화 입법예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11.24)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6)
5. 어린이용 환경유해인	<u>l</u> 자	ㅇ 신규	o 제조·수입업자의 어린이용품 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환경보건법 ('15.1.1)
표시제도	시행		(4종)에 대한 함유여부 및 함유 량 표시 의무화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어린이 활동공간·용품 유해물질 사전에 관리한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0)
6. 토양 오염	 오염토지 	∘ 신규	'96.1.6 토양법 시행 이전 양도 등의 사유로 해당토지를 소유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 불법축사 사 용중 지 명령 및 폐쇄명령	○ 무허가·미신고 시설 은 고발	 고발 조치 외에 사용증지, 폐쇄 명령 신설, 사용증지명령에 갈음 하는 과징금 신설 ⇒ 불법축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 정처분 근거를 마련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 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환경부 유역총량과(044- 201-7021)
[3] 가축분뇨 실태 조사 실시	ㅇ 신규제도	 토지에 출입하여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조사 실시 시⇒조사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 활용 	및 이용에 관한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 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0 M = 71-1/0 / /
4 가축분뇨 퇴비액비 화의 기준	<u> </u>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 도·해명)'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 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환경부 유역총량과(044- 201-7021)
8. 생태계보전협렵금의 부과단가 조정	∘ 250원/m²	○ 300원/㎡으로 조정 [조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 해명〉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15.1.1)
		-1107071114EB7B THE/1 F6	환경부 자연정책과 (044-201-7224)
9.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o 건축용, 자동차 보수 용, 도료표지판용 도료	o 건축용, 자동차 보수용, 도료포 지판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관리 강화	의 VOCs 함유기준 (g/L)을 설정 - 건축용 도료(콘크리트ㆍ시멘트ㆍ몰타용 등)의 경우 수성무광 40 이하, 유성내부 400 이하등 기준 설정 - 자동차보수용 상도 - topcoat 500 이하등 기준설정 -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수성 200 이하, 유성 450 이하등 기준설정	- 건축용 도료(콘크리트 · 시멘트 · 몰타용 등)의 경우 수성무광 35 이하, 유성내부 200 이하 등 - 자동차보수용 상도-topcoat 500 이하 등 -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수성 170 이하, 유성 400 이하 등 기 준설정	제61조의2
10.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 〈 신 설 〉 ○ 일부 도장시설만 대기 오염 배출시설로 관리 - 조립금속・기계・기 기・장비・운송장 비・가구 제조시설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 〈 신 설 〉	 보일러중 LNG 및 경질유를 사용하며 시간당 증발량이 2t/h 또는 1,239,000kcal 이상인 경우대기배출시설에 포함 배출시설의 업종에 구분없이 적용 용적이 5㎡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숯가마 등 대기배출시설에 포함 용적이 30㎡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용적이 150㎡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시행규칙 제5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토	교통부	
1. 2세대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신설	○ (지원대상 확대) 주택건설자금 및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에 국한되던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 ○ (지원방식 다변화) 민간자금을 임대주택·도시재생사업에 유치 하기 위하여 단순 융자 외 출자, 투·융자 등 지원방식 다변화 ○ (전담 운영기관) 기금관리의 공 공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 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 관으로 지정	
2. 통합 전세상품(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 금리 연 3.3% : 소득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5.5 천만원) : 수도권 1억, 지방 8천만원 한도 : 최장 8년 가능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 금리 연 2.0% : 지자체장 추천(최저생계비 2배이내 등)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4백만원 한도 등 : 15년	 어범목 전세대출 : 금리 연 2.7~.3%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1% 우대) : 소득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5.5천만원) : 수도권 1억, 지방 8천만원 한도 : 최장 10년 가능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주택법 제63조 제1항제8호 ('15.1.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5)
3.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 (대상) ①취업준비생,	주택법 제63조 제1항제8호 ('15.1.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A		관계 부서
		은 1순위 청약자 중 40% 가점 및 60% 추첨제, 다시 2순위 청약자중 가점 및 추첨제, 이후 3순위 추첨 (총 5단계)		
		* 민영주택 85㎡초과는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100% 추첨		
3 입 ² 저축		o 청약예금 가입자는 가 입 후 2년이 지나야	(3개월) 기간 폐지하여 즉시 청	
예치 . 변경	살 액	청약 주택규모 변경 가능(규모 상향시는 추	약 허용	국토교통부
기간 제한	-	가로 3개월 지나야 청 약 가능)	예치금액 이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 허용	주택기금과 (044-201-3351)
④ 가점 ⁷		○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 간에 따라 가점(최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 기준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3)
유주 라점 [,] 폐지		32점)을 받고 있으나, 유주택자(2주택 이상) 는 이와는 별도로 감점 (1채당 5~10점) 부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5 가점자 소형 저가		o 청약자 및 배우자가 일정한 기준의 소형· 저가주택(전용 60㎡이 하, 공시가격 7천만원	 지역별 집값 편차 등을 고려하여, 소형·저가 주택 기준을 완화(전용 60㎡이하, 수도권은 공시가격 1.3억, 지방 8천만원 이 	
기준		77 • 1 1 1	하 1채)	국토교통부 즈태기그과
		작시도 신ㅜ	o 소형·저가 주택 기준 적용 대상 을 세대구성원 전체로 확대	주택기금과 (044-201-3351)
6 청약동	투 장	o 청약통장 유형 4개(청 약저축, 청약예금, 청	'15.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 원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5.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7.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 (대상) 70만 가구 ○ (월평균급여) 9만원	○ (대상) 97만 가구 ○ (월평균급여)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주거급여법 ('15. 6월)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확 달라진 새로운 주거급 여, 내년 6월 또는 7월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9)
8. 대한지적공사의 명칭 변경 및	ㅇ 명칭: 대한지적공사	o 명칭: 한국국토정보공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15.6.4)
업무범위 조정	○ 업무범위: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 호부터 제5호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 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사업 3.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 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 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 4.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 에 관한 연구・교육 등 지원사업 5. 지적전산자료를 활용 한 정보화사업 6. 그 밖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업무범위: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자의업무범위(지적측량업 제외)에해당하는 사업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해당하는 사업 2.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연구・기술개발・표준화및 교육사업 3. 공간정보・지적제도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국제 교류・협력및국외 진출사업 4.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제1호및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유로실시하는지적측량 5.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에따른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에따른 지적재조사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수행할수있는 사업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5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6)
12. 부동산 중개보수		매매/임대차 0.9%/0.8% 이 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매매 6~9억 구간 요율 0.5%이하임대차 3~6억 구간 요율 0.4%이하	시·도 조례 ('15.2~6월예정)
요율개선				각 시·도 토지관리과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 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3)
	② 85㎡ 이하 일정설비 (부엌, 욕실 등)를	0.9%이내에서 당사자간 협 의	 º 매매 0.5%, 임대차 0.4%이하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 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공인중개시법 시행규칙 ('14.12~'15.1월 예정)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신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3)
13.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o 개발사업 구역내의 진 입로 공사비만 인정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가치상승에 기여한 경우 개발사업 구역외의 진입로 개설비용을 공사비로 인정	
		 7개 부담금만 개발비용 인정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을 추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 (학교용지부담금, GB보전부담금, 도로원인자 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과금 및 추가 설치비용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 340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4.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건설워크넷) 개소	 개발비용의 인정시점을 사업 인허가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만 인정 ○ 기존 온라인 포털의 구인・구직 기능은 단순 공지나 입사지원정도로 국한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별로 별도구인・구직 운영 	직 시스템을 "건설워크넷"으로 통합 건설분야 일자리를 한분에 확인 가능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경력자료를 직접 활용하 여 신뢰성 있는 인력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인·구직 지원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 보도자료〉구인·구직정보 한곳에	일자리 정보센터 개소 '14.11.28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개설	
15. 취약 [] 시설물의 취약시설	o 등급에 상관없이 반기 1회 이상	∘ 취약시설물(D,E급)의 경우 해빙 기·우기·동절기의 특성을 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안전점검 실시횟수 를 확대 조정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기준 완화	물 정기점검 실시시기 확대		영하여 1년에 3회 이상 실시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	특별법 시행령 ('15. 1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② 안전진단 전문기관 기술인력 등록기준 완화	o 중급기술자 '기사'자 격 제한	'기사'자격 삭제☞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 1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3 안전진단 전문기관 장비보유	ㅇ '비디오카메라' 보유	'비디오카메라' 삭제☞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5. 1월)
	등록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16.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도시내 융·복합 개발 촉진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허용용도, 밀도(건폐 율, 용적률) 등 건축제 한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17. 도시계획시설내 설치할 수 있는		○ 공공청사, 학교, 문 화·체육시설의 편익	o 공공청사, 학교, 문화·체육시설 의 편익시설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편익시설 확대		시설 - 주차장·휴게소·공 중전화·구내매점 등 이 자동차정류장 편익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 설	- 제1종 근생시설(휴게음식점·마을회관), 제2종 근생시설(극장등, 직업훈련소, 테니스장등), 도서관,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어린이회관이 자동차정류장 편익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교육원, 직업훈련소,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14.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6)
18. 오피스 텔 등 분양건축 물 분양제도 개선	분양오피스텔분양신고 기준완화	ㅇ 20호실 이상	○ 30호실 이상으로 완화 ☞(참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2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6)
	②분양건축물수의계약요건완화	o 최초 공개모집후 미분 양면적이 일정요건에 미달될 경우 2차 공개 모집 후 수의계약 가능	o 최초 공개모집후 발생되는 미분 양 물량은 바로 수의계약 가능 ☞(참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2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6)
	③ 분양 오피스텔 분양계약 서 표시 전용면적 산정방법 일원화	ㅇ 중심선 치수	○ 안목치수 적용 ☞(참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2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6)
19. 자동차 대체부품인증 시행		ㅇ 없음	자동차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인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고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저렴하고 품질 높은 자동차 대체	('14.12)
		보지표/시험이고 점을 표는 시중시 데제 부품 활성화	국토교통부자동차 운영과 (044-201-3853)
20.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시망·후유장애시 최 대 1억원, 부상시 2천 만원, 대물피해시 1천 	아사망·후유장애시 최대 1억5천 만원, 부상시 3천만원, 대물피해 시 2천만원	
	만원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10년 만에 1.5배 확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8)
21.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신규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 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5.1.8)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 령정보〉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 3840
22.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 용출국통로 (Fast	∘ 1단계 운영 (동편 전용출국통로, 오전	○ 2단계 확대 운영 (동·서편 전용출국통로, 7~20시)	'15. 1/4분기
전공설시중조(Pasi Track) 운영	(6년 선둥철작동도, 도선 8~10시)	(중 * 시한 선생물 4 생물, 7 * 20 시)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 로 시범운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6)
23.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는 인터넷으로	 오무편이나 메일 등을 통하여 항공장애 표시 등 설치 신고서를 제출 	인터넷을 통하여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서를 제출가능	항공법 시행령 ('15. 1.) 국토교통부
	근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5)
24.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조건 완화 시행	o 항공등화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항 공등 화시	o 항공등화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항 공등화시설과 전력시설에 대한 6	

356 : 2015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28. 서수원 -평택	 통행료 인하 	∘ 1000원 ~ 3,100원	ㅇ 900원 ~ 2,700원	관계 부서
민자고속 도로 통행료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044-201-3898)
최대 400원	② 통행료 이사 공기	ㅇ 매년	ㅇ 3년(7.37%, 연평균 2.4%로 제한)	
<u>4</u> 00년 인하	인상 주기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044-201-3898)
	3 MRG	ㅇ 적용	ㅇ 폐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044-201-3898)
29. 긴급견	인	o 민자구간 미적용	ㅇ 적용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뉴 스〉보도자료〉무료긴급견인서비스, 민자 고속도로로 확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044-201-3902)
		7	상청	
1. 기상사업 완화	등록기준	o 기상인력기준 2명	o 기상인력기준 1명	기상산업 진흥법
				기상산업 정책과
2. 기상용 - 신규 도입		○ 슈퍼컴퓨터 3호기 운영	 슈퍼컴퓨터 3호기, 4호기(우리) 운영 세계기상분야 슈퍼컴퓨팅 성능 향상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758TF → 1,205TF(2014년 8위 → 5위)	기상청 슈퍼컴퓨터운영과 (043-711-0230)
			☞ (참고)기상청홈페이지〉행정과정책〉보도	(01) /11 (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8. 온실가스 변화 경향 실시간 제공	연 1회 월평균과 연평균 농도 보고서로 발간	이 매일, 일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웹페이지 제공 ☞ (참고)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www. climate.go.kr)에 제공 예정	기후변화감시센터 (041-674-6420)
	보건	복지부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	이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사등 에관한법률 ('14.11.23)
		신고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면허신고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2-202-245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o 국가예방접종 13종 백 신 지원	o 국가예방접종 14종 백신 지원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터〉보도 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15.5~)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39)
3.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보건소에서만 무료접 종 실시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병·의 원에서도 무료접종 실시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터〉보도 자료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등 ('15.10~)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21)
4.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및 의료비	o 충남 시범사업 (14년) o 보건소에서만 잠복결	o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 대상 잠 복결핵감염 검진	결핵예방법 ('15.7월)
지원	핵감염 치료 지원	민간 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감 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 확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043-719-73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4)
8. 희귀질환 접근성 강		o 희귀질환치료제 경제 성 평가를 거쳐 보험 등재됨	 어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는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는 특례제도 신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개정안 입법예고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심평원 장 공고) (15.3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3)
9. 휴게음식 [*]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예 : 음식 [*]	영업소, 소 전면금연	o 100㎡이상 전면금연구역 운영(2014년부터)	ㅇ 모든영업소(20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 ('15. 1월) 보건복지부
호프집 등)				건강증진과 (044-202-2824)
10.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체계개편	o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선정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수준 -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수준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수준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수준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5.6월, 잠정)
		o 급여수준 : 최저생계비	o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수준 -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 (의료·교육급여) 현행과 동일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044-202-3052)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노인·장애인 등	o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464만원	

362 :: 2015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2. 임신·출산·육아 바우처 카드 통합	o 고운맘카드, 맘편한카 드, 아이사랑카드, 아 이즐거운카드 사용 시 각각의 신용카드 발급 해서 사용 - 최대 4개의 카드 발	o 기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 운맘, 맘편한, 아이행복(아이사랑 카드+아이즐거운카드) 기능 사 용 가능 - 다수의 신용카드 발급 불필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급 불가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 (044-202-3204)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o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가정 지원	- ('15.2월)
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8)
14.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등록 허용	-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신청 및 등급심시를 거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상이등급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5. 5월)
		(9천여명)는 등록절차 간소화 o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 당 등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 애인 복지서비스는 제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8)
15.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o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ㅇ 장애등급 1급부터 3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6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1)
16. 장애수당 급여인상	o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o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 및	'15.1월
	재기 및 사장위계승 . 3만원	차상위계층 : 4만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044-202-332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_	0 _	2112 "8	관계 부서
	④ 인공관절 수술비	-	○ 지원대상 : 저소득노인 약1,900명○ 예산 : 20억원	
	지원 (신규)			노인정책과 (044-202-3463)
21. 노인 시	·회활동지원	ㅇ (사업명칭) 노인일자리	o (사업명칭) 노인사회활동지원	'15.1월~
		o (사업규모) 28만명 [*] *재능나눔 시범사업 3만 명 별도	○ (사업규모)33.7만명	
		(재능나눔 활동기간) 3 개월	o (재능나눔 활동기간) 6개월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 (전담인력 인건비) 월 109만원(1,823명)	○ (전담인력 인건비) 월116.7만원 (1,929명)	(044-202-3472)
22. 장기요 ⁴ 평가방법		○ 평가 주기 2년 ○ 식품위생관리 관련 평 가지표 無	평가 주기 변경, 평가지표 신설 및 강화, 평가 결과 하위기관의 질관리를 위해 수시 평가 실시 등	장기요양기관평가 방법등에 관한 고시 ('15.1~)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3, 3511)
23. 보육료 · 학비지원키 통합	유아 노 하나로	o 보육료는 아이사랑카 드, 유아학비는 아이즐 거운카드로 지원	o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가능	영유아보육법 ('15. 1월)
		o 아이사랑카드는 3개사 (KB국민,우리,하나)에서 발급하고 유아학비는 NH농협에서만 발급	 ○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NH 농협, BC, 롯데 7개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가능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내년 1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9)
24. 국공립 ⁽ 확충	거린이집	o 어린이집 기부채납에 따른 혜택 없음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 납하는 경우 기업의 근로자 자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관련 법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 월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지원 이 농어민 보험료 지원 사업 기준소득월액 : 85만원 - 85만원 이하 : 보험료 의 1/2 지원 - 85만원 초과 : 월 38,250원 지원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 의 1/2씩 지원 o 농어민 보험료 지원 사업 기준소 득월액 상향: 85만원 → 91만원 - 91만원 이하: 보험료의 1/2 지원 - 91만원 초과: 월 40,950원 지원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29. 기초연금선정 기준액 상향조정	○ (선정기준액) 단독 87 만원, 부부 139.2만원 ○ (지급액) 최대 20만원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등 10~20만원 ** 부부수급자 16~32만원	○ (선정기준액) 단독 93만원, 부부 148.8만원(15.1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 (지급액) 최대 20만 3,600원 (15.4월,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 예정)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등 10만 1,800원 ~ 20만 3,600원 ** 부부수급자 16만 2,880원 ~ 32만 5,760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여성	가족부	
1. 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	 여성발전기본법 (추진체계)여성정책조 정위원회, 여성책임관 (보호범위)모성권 (행사)여성주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추진체계)양성평등위원회, 양성 평등책임관 (보호범위)부성권까지 확대 (행사)양성평등주간 양성평등실태조사 실시 	양성평등기본법 ('15.7.1)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02-2100-6149)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ㅇ (센터)140개소,	ㅇ (센터)150개소	'15.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송 등 법률지원, 채권추심 지원,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뉴스·소 식〉 보도자료〉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33~5)
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만12세미만 아동대상)	o 월 7만원/인 지원	책임강화제도 마련 o 월 10만원/인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15.1.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5)
9.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실시	o 6개 센터 시범사업	o 전국적 <u>으</u> 로 확대 실시	'15.1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02-2100-6368)
10.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 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o 해바라기센터로 명칭 일원화	사업 지침 (2015.1.1.)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82/ 6385)
11.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시설 신규 지원	o 총 보호시설 27개소	o 총 보호시설 29개소로 확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1분기)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85)
12. 성매매 방지 내실화	ㅇ 신설	○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 간(매년 9.19~9.25)으로 지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1 1	0 L		관계 부서
	법	무부	
1.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도입 및 대한 보험계약자의	∘ 명시의무 ∘ 1개월	∘ 설명의무 ∘ 3개월로 연장	상법 보험편 ('15.3.12.)
계약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2.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	ㅇ 전면 금지	ㅇ 일부 허용	상법 보험편 ('15.3.12.)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3. 보험모집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하게	ㅇ 규정 없음	보험대리상 및 보험설계사가 할수 있는 행위를 열거하고, 그 효력이 보험회사에게 미치게 함	상법 보험편 ('15.3.12.)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4. 피보험자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권	ㅇ 규정 없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 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실수로	
행사 제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보 험자가 그 가족에 대하여 대위권 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5.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o 보험금청구권 : 2년 o 보험료청구권 : 1년	o 보험금청구권 : 3년 o 보험료청구권 : 2년	상법 보험편 ('15.3.12.)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관련 법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상사법무과 (02-2110-3167)	
	③ 공익 신탁 인가절차 구체화・ 서식마련	ㅇ 규정 없음	o 공익신탁 인가절차 구체화 o 인가신청서 등 서식 마련	공익신탁법 시행령 ('15.3.19)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15.3.19)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④ 공익 신탁의 건전성·	ㅇ 규정 없음	 공시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공익신탁에 대해 외부감사 의무화	공익신탁법 ('15.3.19)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5 공익 신탁의	ㅇ 규정 없음	o 신탁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공익신탁법 ('15.3.19)	
	악용방지 를 위한 제도 도입		o 공익신탁이 종료될 경우 잔여재 산은 국가, 지자체나 유사한 목 적의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도 록 함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10. 마을변호		o 466개 마을 733명 마		해당사항 없음	
전국 모든 배정	· 급 · 면	을변호사	1,455명 마을변호사로 확대 ☞(법무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우리 마을에 '변호사'가 생겼습니다."	법무부 법무과 (02-2110-3170)	
	교육부				
1. 교복 학 ³ 제도 시행		o 이전 교복 구매 형태 : 개별구매, 공동구매,	○ 20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 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	-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훈련비 지원 확대	타 훈련 참여 불가능 - 계좌한도(200만원)내 훈련비 지원	훈련 참여 가능 -동일 직종 취업 시 훈련비 전액 지원	직업능력능력 개발실시규정 ('15.1)
			고용노동부인적 자원 개발과 (044-202- 7319)
5.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o 초단시간 근로자 등의 훈련 참여 불가능 - 실업자훈련 간 참여방 식 이원화	초단시간 근로자, 택배기사 등 실업자 훈련 참여 가능실업자훈련 참여방식을 '내일배 움카드'로 일원화	실업자 등 직업능력능력 개발실시규정 ('15.1)
			고용노동부인적 자원 개발과 (044-202- 7319)
6.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신설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부터 구직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가 가능 (채용일정 · 결과 등의 공지) 구 인업체는 채용서류, 채용일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15.1월)
		채용여부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알려줘야 함 이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 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 출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할 수 없음 ※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 우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 인을 받아 채용심사비용의 일 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해명자 료〉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채용서류 돌려 받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과 (044-202-733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를 지원 -(전환장려금) 전환전 시간비례	시행지침 ('15. 1월)
		임금보다 추가지급한 임금 및 그 밖의 전환수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정액 지원(중소·중 건기업만) - (대체인력지원금) 전환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 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단 (044-202- 7505)
	-	○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중 소·중견기업)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 ('15. 1월)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단 (044-202- 7505)
11.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	o 근로자지원 : - 연간 500만원 한도로 최	 근로자지원: 상동 사업주지원(신설):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시 (15.1월)
	대 5년간 지원	최대 1년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9, 7462)
1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14년말 종료경비업종지원기준율	 '15년 ~ '17년말까지 지원기간 연장 경비업종 지원기준율(12%) 정년요건 완화(사업개시 이후 정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시 ('15.1월)
	(23%)	이 성년요간 완봐(사업개시 이후 정 년 미설정 → 신청 현재 정년 미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o 사업개시 후 정년 미설정	설정)	(044-202-7459, 7462)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무기계약 전환시,첫 6개월간 월30만원이후 6개월	 '15.1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비정규직재고용) 지원 수준 조정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첫 6개월간 월 40만원/ 이후 6개월 월 80만원 으로 상향 	고용노동부 고시 (2015.1.1.)
	월30만원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책마당〉대 상자별정책(여성))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8)
14.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변경 및 '15년 부담기초액 확정	장애인 고용부담금, 미달인원 구간별 차등 부과	○ 미달인원 전체 일괄부과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장애인 고용 부 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시 (15.1월)
	부담기초액월 67만원미달인원 구간별 차등부과기산구간 4단계	 월 71만원 미달인원 전체를 하나의 부담기 초액으로 일괄부과 가산구간 5단계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1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확대	o 건설현장은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 2015.1.1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 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 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 명 이상인 공사현장은 보건관리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5 ('15.1.1.)
		자를 선임하여 보건관리자의 직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 7742)
	인사	혁신처	
1.	○ 5급 공채, 외교관후보 자 선발시험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7급 공채(이에 상당하는 외무공	공무원임용 시험령,

378 : 2015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채용 목표제			무원 공채 포함)	균형인사지침 ('15. 1)
7급 공무원 공채시험 까지 확대	고 시험실시 단위별 채용목표 인원	시험실시단계별로 당 초합격예정 인원의 20%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합격예정인원의 20% (7급 공채 및 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합격예정인원의 30% 	
	③ 추가합격 상한	○ 목표인원에 미달하더 라도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 제1차시험에서는 추 가합격상한(10%) 의 제한을 두지 않음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추가합격은 당초합격예정인원의 10%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상한 (10%)의 제한을 두지 않음 ○ (7급 공채 및 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추가합격은 당초합격예정인원의 5%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2-2100- 6613)
	④ 추가 합격선	∘ 1차 : -3점, 2차 : -2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3점, 2차 -2점 (7급 공채 및 이에 상당하는 외무 공무원 공채시험) 필기 -2점 	
		행정	자치부	
1. 재외 국민에 대한	 국외이주자의주민등록	o 주민등록 말소	o 주민등록 유지 (거주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법 ('15.1.22) 행정자치부

380 : 2015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			관계 부서
2. 경찰서「여성청소년 수사팀」운영	 죄종별로 구분, 다양한 기능에서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담당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실종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체계 마련 분야별 특화된 수사 전문성 및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여성·아동 등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보호와 지원 전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2-3150- 1391)
3.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인상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15년 이상 30년 미만 경장, 30년 이상 경사급 보수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23년 이 상 30년 미만 경사, 30년 이상 경위급 보수 [참고] 청원경찰법 제6조 	청원경찰법 ('14. 12월)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 3150-2756)
	국가	보훈처	
1.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손자녀 수급자	o '45.8.15. 이후 유공자 가 사망한 경우 보상 금 미지급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 망한 경우 1명에 한하여 보상금 지급	독립유공자예우법 · 시행령 ('15. 1월)
선정기준 개선	ㅇ 나이 많은 자에 지급	o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11)
2.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ㅇ 신설	독거이며 3개 이상 질환이 있는 생계곤란 참전유공자에게 보훈 섬김이가 주3회 방문하여 가	
		사·간병서비스 지원	국가보훈처복지 정책과 (044-202-5620)
3. 남양주보훈요양원 개원	∘ 5개 보훈요양원 (수원·광주·김해·	남양주보훈요양원 개원- '15. 1.19부터 입소개시,	국가보훈처복지 운영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3. 진급·전역 시 범죄경력조회 강화	범죄경력조회 강화 법원에서 처벌받은 경 진급 및 전역 심사시 조회할		군인사법시행령 ('14. 7. 18.)
	보제공동의서 활용	개정하여 법적근거 마련 「참고」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군인 사법시행령〉제62조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4.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 완화	 일반군무원 - 공개경쟁채용시험 5급 · 7급 : 20~40세 9급 : 18~40세 - 특별채용시험 	 이 일반군무원 1 기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 18세 이상 이 기능군무원 기능 6급 이하 : 18세 이상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15. 1월)
	 2·3·6·7급: 53세 4·5·8·9급: 45세 기능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기능6~9급: 18~40세 특별채용시험 기능6~9급: 45세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05)
5.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자격기준 개선	o 자격기준 : 상담관련 자격증과 상담 경험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채용시 국 방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 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 에 대해 자격기준 변경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 	군인사법 시행령 ('14. 11월)
		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10 년 이상의 군 복무경험자에 한해 상담경험을 인정)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4)
6.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훈련 소집제도 개선	o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 만 신청 가능	o 훈련 부과와 상관없이 원하는 일 정에 훈련 휴일/전국 단위 훈련 신청 가능	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 ('15. 1월)
		o 향방작계훈련은 1차 보충훈련부 터 휴일훈련 신청 가능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11. 장병 전투임무 수행 및 복무여건 향상을 위한 보급품 지원 확대	핵심개인장구류 집중보급	○ 노후 및 부족물자 위주의 보급	 핵심 개인장구류를 하나로 묶어서 부대 단위로 집중 보급하여 완결 2015년까지 전방 GOP사단 전투부대 100% 신형 보급 	관계 부서 -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99
	② 동운동복 및 베갯잇 (피) 보급기준 확대	o 입대시 초도 1매 지급	o 입대시 초도 2매 지급	-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99
	3 개인일 용품 현금지급 품목 확대	 개인일용품 중현금지급 품목 :세숫비누, 세탁비누,치약, 칫솔	 개인일용품 보충보급품 전 품목 현금지급 추가품목 : 휴지, 가루비누, 면 도날, 구두약	-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99)
12. 위로금 의료지원금		○ 신설 *피해배상에 대한 소멸시 효 경과로 법적보상 근 거 없음	○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법적근거 마련 ☞(참고)국방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 보〉국방부 관계법령(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 4. 16.) 국방부 시설기획과
13. 군인 · · 징계부가금	군무원 금 제도 시행	o 신설	o 군인·군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하여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정계부가금 부과	(02-748-5859) 군인사법 ('14. 12.), 군무원인사법 ('15. 4.) 국방부 법무과 (02-748-6818)

•••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바으	사업청	관계 부서
1. 국산 SW 사용 시 인센티브 부여	 신 설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시 SW 국산화 평가 배점 : 2.5점 	 핵심기술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시 SW 국산화 항목/ 배점 반영시행: SW 중심사업 2점, 일반핵심기술 1점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평가 및 협상지침,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15. 1월)
		시 SW 국산화 평가 배점: 3점 * 상용SW 국산화 평가항목 추가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 행정규칙/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 가 및 협상지침,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 무처리지침	방위사업청 획득기반과 (02-2079- 6377)
 2. 저가낙찰 방지 및 기술중심의 연구개발을 위한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예안서 평가 시 비용평가 최고점 부여 제안비율 : 80%	90%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 ('15. 1월)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 행정규칙〉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 가 및 협상지침	방위사업청 사업운영평가팀 (02-2079- 5032)
3. 국산화 II 개발지 성실실패 원사업 재도전 재도전 제도 도입 기회	ㅇ 신 설	○ 성실실패로 판정된 기업에 대해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재도전 기회(최대 2년) 제공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14. 12월)
제공 및 지원대 상 확대		법령〉행정규칙〉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 644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 핵심부 국산화 개발 지원대	핵심부품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까지 확대 *단, 국산화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부품은 제외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14. 12월)
확대		 소재, 소프트웨어도 지원대상으로 확대 로확대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 법령〉행정규칙〉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 6442)
4. 섬유 · 피복류 군수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	○ 신 설 CC	유해물질 안전관리 필요품목 지 정권자(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 모총장) 명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15. 3월)
마크) 적용		 유해물질 안전 관련 품질보증 적용기준은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 구서에 정하여 적용 유해물질 안전 관련 품질 검사를 거쳐 합격된 제품에 국가통합인 증마크(KC) 표시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 · 정책〉 법령)방위사업법령〉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청 물자규격팀 (02-2079- 4690)
	병	무청	
1.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석	기타시기(6~12월)	2개(1·2지망) 선택 후 추첨	지침 (2015년 2월 입영자부터)
	선착순에 의한 선발	☞ (참고) 병무청홈페이지〉뉴스마당〉 공지 사항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 2733)
2.306보충대 해체후 사단직접 입영	, o 306보충대 입영 후 관할 사단으로 배치	'14년말 306보충대 해체 후,'15년부터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직접입영	지침 (2015년 1월 입영자부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7. 산업기능. 제한기간 :	-	o 1년이상 근무해야 다른 업체로 전직 가능	o 6개월만 근무해도 다른 업체로 전직 가능	병역법 시행령 (2014.11.10.부터)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 2773)
		문화ㆍ최	체육관광부	
1. 문화예술 프로그램 :		o <u>프로그램</u> 부재	○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 로그램 신규 지원 ☞(참고)추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문 화예술교육과 (044-203- 2764)
2. 안전 하고 위생적인 체육시설 환경 조성	① 체육 시설 안전 기준	화재 대비 피난안내의 무 없음체육시설 내 사고 발 생 시 보고 의무 없음	 화재 대비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 안내 체육시설 내 사망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문화체육 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② 스키장 안전기준 개선	 ○ 안전망, 안전매트의 구체적인 기준 없음 ○ 길이 1.5㎞ 이상 슬로 프에 스키구조요원 배 치 : 2명 ○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 상(설면으로부터 1.5m 이상)이 되도록 설치, 안전매트의 두께는 50㎜이상 ○ 길이 1.5km 이상 슬로프에 스키 구조요원 배치: 3명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배치 : 1명	o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배치 : 2명	문화체육 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③ 수영장 안전·위 생 기준 개선	○ 탁도기준 : 2.8NTU ○ 중금속과 관련한 수질 기준 없음	 탁도기준: 1.5NTU 중금속 수질기준 마련 (비소 0.05mg/l이하, 수은 0.007mg /l 이하, 알루미늄 0.5mg/l 이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문화체육 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3.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	o「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상의 모태펀드에 스포츠계 정을 신설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4.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	ㅇ 태권도 콘텐츠 공모, 태권도 관	-
		광자원화 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044-203-3165
5. 창조관광사업 개편 및 창조관광육성펀드	ㅇ 38백만원	○ 154백만 원으로 확대 개편 - 2단계 맞춤형 지원 및 창조관광	관광진흥개발기금 법, 고시('15.1월)
도입		사업 지정 * 참신하고 혁신적인 중소 관광 사업체는 누구라도 지원 가능 - 창조관광육성펀드 도입(관광기 금 130억 원) ☞ (참고)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공모전 홈 페이지(www.venture-visitkorea.com) : 추후 개편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16)
6. 장애물 없는 관광지	-	ㅇ 전국 관광지 및 관광사업장 5개	관광진흥법
「2015 열린		소 선정/ 개소 당 2억원 한도 내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관광지」사업		에서 장애물 없는 관경 개선 지원	관광정책과 (044-203-2816)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 공사 홈페이지 : 사업 공고일 부터 확인 가능	
7.호텔 등급 평가방식 및 표시체계 개편	o 단일 평가기준	 호텔 등급별 수준을 고려한 평가기준 마련 암행평가 (5성급, 4성급), 	관광진흥법 시행령 ('15. 1월)
	. 디그런게키키 시이청	불시평가 (3성급, 2성급, 1성급) 도입	문화체육 관광부
	등급평가기관 이원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등급평가기관 일원화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	관광산업과 (044-203-2834)
	 무궁화 문양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별 모양 (5성급, 4성급, 3성급, 2성급, 1성급) ※별 갯수가 많은 쪽이 높음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 	
8. 관광사업으로 일반야영장업 신설	o 관광사업에 미포함	o 입지·규모 등을 등록기준에 적 합하도록 하여 야영장이 소재하 고 있는 시·군·구에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15. 1월)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41)
	문화	화재청	
1. 궁·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	o 지역주민 혜택 부재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관람료 50% 감면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5. 서울 시청자미디		○ 부산, 광주, 인천 등 5개 지역에 서비스	•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운 영을 통해(전국 6번째),	방송법 제90조의2
설치・운영	3	제공	- 지역 시청자에게 미디어교육, 방송제작장비 지원 등 서비스 제공	방통위 시청자지원팀 (02-2110 -1297)
		미래창	조과학부	
1. 조달청 종합쇼핑 몰 등록 소프트웨	① 분리 발주 대상 SW		5천만원 이상 그리고 국가인증 획득조달청 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 ('15. 1월)
분리 발주 의무화		 5천만원 이상 국가인증* 획득 *GS, CC, 행정업무용, NET, NEP, 국정원 검증·지정 		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 (02-2110-1837)
	② 제외사유 적용주체	o 발주기관 자체 판단	조달 발주 사업의 경우, 제외사유 적용 시 사전에 조달청으로부터 사전 검토 의무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 ('15. 1월)
				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 (02-2110-1837)
2.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및	대기업참여제한강화	o 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SW사업의 유지 및 보 수 사업에 한시적 참	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SW사업의 유지 및 보수 사업에도 참여제한	
중소기업 확대 적용		여허용		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 (02-2110-1833)
	② 중 소 기업 범위	상시근로자수 300인이하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o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5.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확산		- 초등학생 대상 사물인터넷 DIY체 험교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경진 대회 개최	* * * * * * * * * * * * * * * * * * * *
	④ IoT 혁신센터 운영	-	- 창조경제혁신센터, 무한상상실 등과 협력확대 및 IoT 혁신센터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신산업팀 (02-2110-1722)
5. 간접비 산출방식 개선	[] 간접비 산출방법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 등급별 일괄적용 -A등급 20%, B등급 15%, C등급 10%, D 등급 5% 	o 전 대학의 실소요 원가계산 방식 으로 개선	의 관리등에 관한규정 (15. 4월 예정)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02-2110-2731
	2 간접비 비율 가·감율 적용	국가R&D사업 참여제 한의 기간 및 건수에 따 라 최대 -2.8%p 감율	 국가R&D사업 참여제한의 기간 및 건수에 따라 최대 -5.0%p 감율 연구비 관리수준에 따라 ±2.0%p 차등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관리등에 관한규정 ('15. 4월 예정)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02-2110-2731)
6. ICT 학점 추진	이수인턴제	 신규 사업 고등교육법상 '현장실 습'에 따른 학점인정 이외에 ICT 특별법에 따른 학점이수인턴제 를 신설 	 ○ '14년 2월 시행된 ICT 특별법 및 시행령 등에 반영된 「학점이 수인턴제」를 추진 ○ 이에 따라 「ICT 학점이수인턴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육 부와의 협의를 거쳐 '15년 1학 기부터 추진할 계획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_	3 L	E 1712 110	관계 부서
			 제도 안내,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참가 기업 및 대학을 선정하고, 기업에서 발굴한 R&D 프로젝 트, 서비스 개발 등의 과제를 대 학측과 공유하여 수요 기반의 매 칭을 지원 	
			 참여 기업, 인턴, 대학 등에 근무환경 구축, 사전교육, 인턴 지도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15년도인턴 150여명을 목표로 추진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기업은 톡톡 튀는 인재를,학생은 현장학습에 학점까지" 	
7. 정보통신 등록기준 폐지	•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공사업 최초 등록 후 매 3년마다 시·도지 사에게 등록기준에 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 ☞ (참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처리의안〉 법률안)「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 공사업법 ('15.3월예정)
		한 사항을 신고	안(권은희의원 등 10인)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02-2110-2958)
피싱,	① 발신 번호	o 일부 통신사 자율 시행	o 발신번호 변작방지, 국제전화 안 내 등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조치	
스미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변작방지 등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		의무화 o 발신번호를 변작한 송신인의 통 신서비스 이용중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02-2110-1947)
최소화	,,,,		☞(참고)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알림마 당〉보도자료〉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 회 본회의 통과	
	2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	o 신고만으로 사업 가능	 등록(등록요건* 완비) 후 사업 가능 * 발신번호 변작방지 등 기술적 조치 구현, 관 	전기통신사업법 (*15. 10월)
	스 사업의		련 인력 및 물적 시설 확보 등	미래창조과학부

396 :: 2015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등록제 도입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알림마 당〉보도자료)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 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	산식품부	
1. 농업보조금 취득한 재신 부기등기 시	·]의	ㅇ 신규	o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 (기재예시) 동 재산은 보조금을 지 원받아 취득한 것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보조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6월, 잠정) 농식품부 재정평가담당관 (044-201-1382)
2. 농업법인 ⁹ 경영활동 지	•	□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 농업경영, 농산물 가공· 유통, 농작업 대행 등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임 의범위 ○ 무한연대 책임 □ 영농조합법인 조직변경유형 ○ 합명·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추가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관광휴 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 농원사업 출자액 한도 유한·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도 변경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6월, 잠정)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7)
			☞(참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 장〉 법령정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14.12 공포, 잠정)	
3. 취약지역여 생활여건 기 시행	., ., _	ㅇ 신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시행3~4년간 최대 70억원(국비 기준)	-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8. 쌀직불금 지원 확대	 지급단가 90만원/ha 지급대상자 기준 2년이상 경작면적 1만㎡이상 또는 	- 100만원/ha - 1년이상 경작면적 1천㎡이상 또는 1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15.1월)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120만원 이상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 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쌀소득등보전직 접지불제사업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044-201-1778)
9.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o 3% - 농기계구입자금 - 귀농인창업지원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o 2% - 농기계구입자금 - 귀농인창업지원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5. 1월)
	- 축산경영종합자금 -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 농업경영회생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1%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6)
		☞ (참고) 농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	
10.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43개 품목종합위험보장방식	○ 46개 품목	농어업재해 보험법 시행령 ('15. 2월)
	- 배(12개 시군) - 단감(3)	- 배(30개 시군) - 단감(12) - 사과(3)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044-201-1797)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 식)보도자료)농작물재해보험, 보험대상 품목 및 종합위험보장방식 확대	
11.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 3만원/3.3㎡	∘ 3.5만원/3.3㎡	농지규모화사업시 행지침 ('15.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15.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확대	 하가대상 소: 600㎡ 초과 돼지: 1,000㎡ 초과 닭: 1,400㎡ 초과 오리: 1,300㎡ 초과 	 여가대상: 준전업규모까지 확대 -소: 600~300㎡ -돼지: 600~300㎡ -닭: 1,400~950㎡ -오리: 1,300~800㎡ 	관계 부서 축산법 시행령 ('15.2월)
	* 15.2.22일까지	* '15.2.23일~'16.2.22일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 법령정보〉축산법 시행령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17)
16.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o 이력관리 품목 - 소 및 쇠고기 (수입산 포함)	- 돼지 및 국내산 돼지고기까지 확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4.12.28.)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알림소 식)보도자료)돼지 및 돼지고기이력제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62)
17.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지원	∘ 신규	 국내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 '15년 지원 규모 : 20개소 - 개소당 지원한도 : 6억원 (보조 3억원, 융자 3억원)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30%(금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조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2)
18.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 확대	○ 인증대상 축종 - 산란계, 돼지	o 인증대상 축종 추가 - 산란계, 돼지, 육계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 광장〉법령정보〉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14.12.1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1.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ㅇ 미지급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50%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59)
22.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완화	 인가 요건 - 5개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등에 지회 확보 이 지정 요건 - 외식산업 관련 총 매출 40억원 이상이거나 외식산업 식재료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인가요건 - 폐지 ○ 지정 요건 - 해당 지구 내 외식업소의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 소식)보도자료)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 건 완화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14. 12월)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7)
23. 식품인력양성	ㅇ 신규	○ 교육인프라 구축 - 식품교육 수요조사ㆍ분석, 교육 프로그램 협의회 운영 및 프로 그램 공모 및 보급, 식품기업 구 인ㆍ구직 정보시스템 구축 ○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신직업 창업교육 및 NCS기반 대기업 교육프로그램,대학생ㆍ 수출형 중소기업 연수프로그램, 사이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18)
24.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ㅇ 신규	 성(省)별·도시별 수출 잠재품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수출전략을수립 청도 물류기지와 현지 냉장·냉동 물류센터 이용 지원 	- 농식품부 수출진흥팀 (044-201-217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수출자 등록, 중문 라벨 제작등 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현지화를 위한 상품화·마케 팅·법률자문 ○ 온라인 입점 절차·브랜드 마케 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 팅 지원	관계 부서
25.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양화	o PC이용 o 신규	 모바일앱으로 확대 (www.maglook.co.kr) SNS서비스 제공(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ID : 농업관측센터) 	-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0)
26. 농업전망 대회 개최	○ 중앙대회(서울) 및 영 ·호남 지역	 지역의 특성과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개최 1월 20일(중부권), 27일(영남권), 29일(충청권) 2월 3일(제주도) (참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 관측정보〉 농업전망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0)
27. 신재생에너지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지원대상 면적 0.1~0.5ha 	○ 지원대상 - 지열냉난방시설 - 목재펠릿난방기 - 지중열냉난방시설 - 폐열재이용시설 ○ 지원대상 면적 : 0.1~1.0ha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15 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사업시행지침 ('15. 1월)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 2258)
28. 농산물 우수관리(GAP) 제도	o 인증신청 - 3차례	o 인증신청(3→1차례), 인증 소요 기간(126→42일), 구비서류(12	* '

			관련 법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개선	인증 소요기간- 126일구비서류- 12종	→3종) o 인증신청 : 1차례 o 인증 소요기간 : 42일 o 구비서류 : 3종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 식)보도자료)농산물 우수관리(GAP)제 도, 인증은 쉬워지고 안전성은 강화	칙 ('14.9.30) 농식품부 소비정책과 (044-201- 2425)	
29.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해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상습범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 천만원 이하 벌금 	o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 시자에 대해 형사처벌 + 과징금 부과 -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위반 금 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 금으로 부과·징수 ☞(참고)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 장〉법령정보〉현행법령〉농수산물의 원산 지 표시에 관한 법률(15.6.4. 예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5.6.4) 농식품부 소비정책과 (044-201-2419)	
30.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연장	ㅇ 유기 5년	○ 유기 5년 + 추가 3년 [*] 지급 * (단가) 논 300천원/ha, 밭 600 * (단가) 논 300천원/ha, 밭 600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 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친환경농업직접 지불사업시행지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15년, 잠정)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40)	
식품의약품안전처				
1.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상호 단절되어 식품안 전 문제 발생 시 효과 	 12개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되어 식품안전 일원화 행정지원 및 식 품안전정보의 공개·공유로 선 제적 식품안전 대응 체계 확립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 ('15. 4월) 식품의약품 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5백만원 이상의 장	o 「국가연구개발규정」에서 정한 제출기간인 매년 2월말까지 제	규정 ('15. 1/4분기)
	비·시설비를 변경하 려는 경우 승인 필요	출하게 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 o 「국가연구개발규정」에서 정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50%이상 사용하도록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 브 확대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 -4137)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산림분야 연구개 발사업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o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외 사용 금액 비율에 따라 최소 3년에서 10 년까지로 제한	○ 「국가연구개발규정」에 준하여 용도 외 사용금액 비율을 국가기 관 간 통일 - 20% 이하인 경우 : 5년 이내 → 3년 - 20% 이상 30% 이하 : 7년 이내 → 4년 - 30% 초과인 경우 : 10년 이내 → 5년 - 둘 이상 병합 : 10년 이내 → 5년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 · 정책〉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산림분야 연구개 발사업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3. 우드그램 품셈 반영	〈신설〉	○ 숲가꾸기 및 직영벌채 설계 시 우드그랩 품셈 반영 ☞(참고)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 정보)훈련/예규/고시〉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15. 1월)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 -420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1 4	0 Е	2의시L 케O	관계 부서
	○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시 자문대상 기준 - 10ha 이상인 경우 〈신설〉	별자치도에 확대 구성하여 국유 재산 처분 시 사전 검토 강화 ○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시 자 문대상 기준 개정 - 특별시・광역시: 1ha이상 - 제주특별자치도와 시(도농복합읍・면제외): 3ha이상 - 그 밖의 지역: 5ha이상 ○ 공・사유림 교환 추진 시 -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취 득재산의 면적이 처분 재산의 면적보다 크도록 면적 규정 신설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 정보〉소관법령〉입법 및 행정예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 -4095)
8. 자연휴양림 설치가능 시설 확대	〈신설〉	 자연휴양림 내 설치 가능시설에 다음 사항을 추가 숙박시설: 트리하우스 편익시설: 모노레일 체험시설: 로프체험시설 체육시설: 산악자전거시설· 행/페러글라이딩 시설 안전시설: 방송시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 정보〉소관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12. 4)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 -4211)
9. 자연휴양림 보험가입 의무화	〈신설〉	○ 재난・안전사고로 인하여 이용 객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 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참고)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자연휴양림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훈령)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림휴양치유과 (042-481 -4124)
13.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국 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증 추가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법령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교육 증 취득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증 취득 후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	정보〉소관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휴양치유과 (042-481 -4124)
14.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구입 또는 수입한 기자 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15.상반기)
		 (참고)「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 -4191)
15.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기준 완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 * 1인 1회 지원에 한함 (다음년도 추가 지원 불가) 지원내역 - 임도·작업로 시설, 목재생산장비 등 8종 	 지원자격 및 요건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에서 1인 2회 이상 지원 가능 지원내역에 생산 운반시설장비(모노레일), 체험시설 추가 	시행지침서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 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 행지침서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 -4191, 4195)
16. 표고자목 구입비 지원	〈신설〉	 사업 대상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	관계 부서
18.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및 조경수 관정시설 보조율 조정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 리(토양개량) 보조율 조정 - 토양개량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10%	행지침서 ○ 토양개량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유기질비료 : 국고+지방비 80% 이내, 자부담 20%이상 * 정액지원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 · 정책〉통합 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 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조경수 관정시설(직접)보조율 조정국고 40%,자부담 60%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 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 행지침서 	, .,,
19. 정원정책 신설	〈신 설〉	o 정원에 관한 법률 규정 신설 및 정책사업 추진 -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 정·운영 - 정원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코리아가든쇼 개최 - 꽃과나무 상담소 운영	진흥에 관한 법률
20.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o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의 사방시설 등 재해 시설 설치 시 보호구 역 해제 절차 이행	 (참고) 국회 홈페이지〉의안정보〉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산림재해 등으로부터 안전관리및 재해예방을 위해 사방시설 등의 설치행위를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가능토록 완화- 송전탑 긴급복구 허용- 사방시설, 산림재해 예방시설 	(042~461 -4249) 산림보호법 시행령 ('14.12.4.)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및 장비 지원(3개소, 42억원)	('15. 1월)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 자료실〉2015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 -4076)
25.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공동사업 지원기준	〈신설〉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동사 업 지원은 신청자 공동명의의 사	- · · · - · ·
강화		업부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함 (사업우선순위에 추가)	산림청 사리새대게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통합 자료실〉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 행지침서	산림생태계 복원팀 (042-481 -8815)
	해잉	수산부	
1. 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의 이 중규 제 개선	○「항만공사법」과「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별도로 실시	을 승인받으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항만공사법 ('15년 3월)
	계획 승인	서 정한 실시계획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 [조(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법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
		령〉「항만공사법」 참조	5751)
2. 해양심층수 부담금 요율 인하	o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	○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 의 0.5% ☞(참고)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1월)
		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 5248)
3. 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	o 염장수산물에 사용하 는 식염의 원산지 표	o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 면제	☞(참고)해양수산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 도자료〉식염의 원산지표시 강화	('15. 1월)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044-200- 5448)
4. 연안어선 선복량 제한 상향 조정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전인망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복합어업	○ 10톤 미만으로 상향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개바다〉보 도자료〉어선 제한톤수 늘고 과징금 크게 올라	수산업법 시행령 ('15. 3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 5517)
5.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	ㅇ 2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개바다〉보 도자료〉어선 제한톤수 늘고 과징금 크게 올라	수산업법 ('15. 3월)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044-200- 5563)
6. 수산자원보호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허용행위 확대	① 일반음식점 등 건축불가 ② 24m 미만 선박수리건조 ③ 농업용 및 수산업용 창 고시설 건축 ④ 수산업을 위하여 물건 쌓아 놓는 행위	일반음식점, 자동차 야영장, 어항	수산자원관리법시 행령 ('15. 1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 5531)
7.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벌칙 강화	○ 환수(부당수령액) ○ 처벌(없음)	환수(부당수령액의 2배)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15. 4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새소 식)보도자료〉수산직불금 부정수급못한다	관계 부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 5465)
수산업협 설립 동조합의 기준 설립이 사업	① 수협 설립인가 기준 중 사업규모 기준 폐지	사업규모기준(지구별 수협 100억원 이상,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 수협 80억원 이상)	○ 사업규모기준 폐지 ☞(참고)해양수산부홈페이지〉법령바다〉법 령〉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4. 12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 5429)
	2 일선수협 상임이사 자격기준 완화	o 상임이사 자격(수협이 나 은행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공공기관, 연구·교육기관이나 민 간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들도 가능 ☞(참고)해양수산부홈페이지〉법령바다〉법 령〉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4. 12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 5429)
9. 배타적경 입어 어획당 체크 포인토	물운반선	o 신설	○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시범실시 ○ 조건부합 일부어선 모범선박 지정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 도자료〉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 연내 공동감시 실시	2015년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14. 12월)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044-200- 5565) 해양수산부 서해어어관리단 (061-240- 7970)
10. 수로도서	러지	ㅇ 종이해도 :16,500원	ㅇ 종이해도 : 18,300원	측량·수로조사

•••